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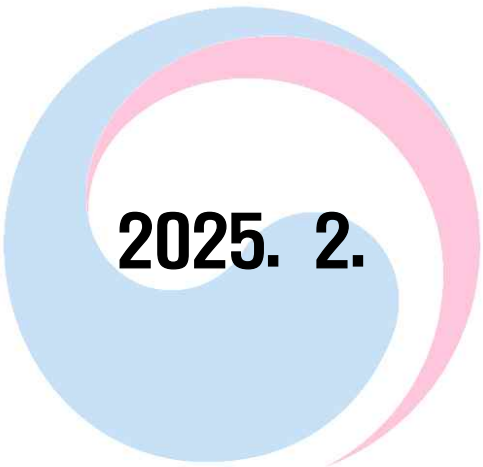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요약]

('25. 2. 특허제도과)

❑ 개정배경

o 그간(23.3월~)의 **특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현행화**하고, 국회·언론에서 이슈화된 **심사쟁점**의 심사기준 강화 및 명확화 필요

- (시행령·시행규칙) 불요불급한 **우선심사**대상 및 출원인 등록지연 기간 정비, 국가R&D 정보기재를 위한 출원서·명세서 서식 정비
- (행정규칙) 예비심사면담 폐지, 전화면담 규정화, 분할·변경출원 등의 심사순위·처리기간 조정, 첨단기술 우선심사 추가 지정 등
- (심사쟁점) 디지털치료분야의 비상식적·미검증 효과(왕의 DNA) 입증, 공동출원의 하자치유가능 시점(초전도체), 모방출원 심사처리기준 반영, 동일자 상·하위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정비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심사기준	주요 내용
특허법령 개정사항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허출원서류	▸국가R&D 정보기재를 위한 출원서·명세서 서식 정비
		발명자	▸발명자 정정시기 제한 및 증빙서류(출원중에도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 등) 강화
		심사절차	▸등록지연에서 출원인 지연기간(거절결정~심판청구기간) 정비
	우선심사 고시	우선심사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추가 ▸탄소중립 녹색기술분류 부여 출원대상 추가 ▸첨단기술 우선심사대상(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추가 ▸우선심사대상 판단기준, 증빙서류 등 명확화 ▸PPH(34개국→36개국) 및 PCT-PPH(31개국→34개국) 대상국 현행화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 제출요건 폐지(비필수) ▸자기실시 요건 완화
	심사사무 취급규정	처리기간	▸분할출원의 심사순위 조정, 변경출원의 심사처리기간 연장(8개월→12개월) ▸심사유예신청 건의 심사처리기간 연장(3개월→12개월)
기준 강화/명확화/현행화		발명의 설명	▸디지털치료분야의 미검증 효과 입증기준 구체화
		발명자	▸명세서, 도면 또는 특이구성이 과도하게 동일한 출원의 합리적 의심사례 구체화 ▸공동출원 하자치유 시점을 출원 전·후로 명확화(2004허5894)
		선출원	▸동일자 상·하위 발명(제36조)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명확화
심층면담 제도정비		심층면담	▸예비심사면담 폐지, 전화면담 정규화 세부절차 정비

목 차

Ⅰ. 개정배경 1

Ⅱ. 개정내용 2

1.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2

2. 특허 · 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사항 8

3. 우선심사 심사기준 정비 12

4. 심층면담제도(예비심사, 보정안리뷰, 재심사면담) 정비 44

5. 심사쟁점의 심사기준 정비 57

6. 일괄심사제도 정비 60

7. 기타사항 62

Ⅲ.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68

Ⅰ. 개정배경

1 특허법 **시행령**('24. 11. 1.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24. 1. 1. 시행)

-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등) 정비
- 심사순위(시행규칙 제38조)를 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
- 출원인 등록지연 기간 정비
- 발명자 정정제도 정비

2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24. 5. 17. 시행, '25. 1. 1. 시행)

- 분할·변경출원의 심사순위·착수기간 조정
- 심사유예신청출원·재심사의 심사착수기간 연장
- 시행령 개정사항(확대된 우선심사 등 대상 삭제)

3 **우선심사** 심사기준 정비

- 우선심사대상 추가지정* 및 요건** 정비

* 첨단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기술분야, 탄소중립 녹색기술분류 부여 출원

** 자체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비필수), 자기실시 요건 완화('25. 1. 15. 시행)

-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및 PCT-PPH 대상국 현행화

4 **심층면담**제도(예비심사, 보정안리뷰, 재심사면담) 정비

- 예비심사면담 폐지, 전화면담 규정화

5 **심사쟁점**(국회질의, 언론이슈 등)의 심사기준 정비

- 디지털치료분야의 비상식적·미검증 효과 입증(왕의 DNA)
- 공동출원의 하자치유가능 시점(초전도체)
- 모방출원의 심사처리 방안(진정발명자)
- 심사·심판합동회의 논의사항(주지부합)

6 **일괄심사**제도 정비

- 일괄심사대상 추가 및 현행화, 일괄심사 신청요건 완화

7 기타사항

- 개정수요, 징수규칙 및 특허분류부여 요건 현행화 등

Ⅱ. 개정내용

1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나목, 하목 개정, 너목 신설, ’24. 1. 1. 시행)

- 재심사 청구대상이 특허결정된 출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추가(제1항제1호 하목)

-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제1항제1호 나목, 너목 신설)

현행(제7부제2장제1절) 7202쪽	개정안(제7부제2장제1절)
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임된 날까지의 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파. (생략)	다~파. (좌동)
	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

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생략)	거. (좌동)
<신설>	너.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까지의 기간
너~어. (생략)	더~저. (좌동)

현행(제7부제2장제3절3.2) 7211쪽	개정안(제7부제2장제3절3.2)
설정등록일이 연장기준일보다 늦더라도 출원인으로 인하여 (생략)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제1항제1호), 심결등에 대한 소송절차(제1항제2호),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제1항제3호)에서 생길 수 있는 출원인으로 인한 절차지연의 유형과 지연기간을 총 44개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설정등록일이 연장기준일보다 늦더라도 출원인으로 인하여 (좌동)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제1항제1호), 심결등에 대한 소송절차(제1항제2호),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제1항제3호)에서 생길 수 있는 출원인으로 인한 절차지연의 유형과 지연기간을 총 45개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현행(제7부제2장제3절3.3) 7211-5쪽	개정안(제7부제2장제3절3.3)
(1) 출원인이 ~~심판 청구기간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특령7조의2(1)(1)(나)]	(1) 출원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의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특령7조의2(1)(1)(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또~~	출원인이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

는 출원인이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특허청장, 심사관 등이 정한 지정기간을 출원인이 연장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출원인이 기간을 연장한 후에 다시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략)

(2)~(9) (생략)

(10) (생략)

출원인이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한편,~~ 2020년 7월 14일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신설>

(11) 서류의 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특령7조의2(1)(1)(서)]

(생략)

(12) 특허출원의 심사를 위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특령7조의2(1)(1)(어), 특칙54의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특허청장, 심사관 등이 정한 지정기간을 출원인이 연장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출원인이 기간을 연장한 후에 다시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좌동)

(2)~(9) (좌동)

(10) (좌동)

출원인이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2020년 7월 14일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5(4)]

(생략)

(13)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특칙54조의5(5)]

(생략)

(11)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특령7조의2(1)(1)(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원인이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된다. 또한 출원인이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도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이 된다.

(12) 서류의 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특령7조의2(1)(1)(어)]

(좌동)

(13) 특허출원의 심사를 위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특령7조의2(1)(1)(저), 특칙54의5(4)]

(좌동)

(14)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특칙54조의5(5)]

(좌동)

현행(제7부제2장제5절5.4.2) 7227쪽

※ 상기 예에서 (생략) 계산된다.

<신설>

개정안(제7부제2장제3절3.2)

※ (좌동)

※ 상기 예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면 심판 청구로 인한 지연기간(30일, 2017. 11. 1.~2017. 12. 1.)도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포함된다.

2 **발명자 정정**제도 정비(시행규칙 제28조 개정, '24. 11. 1. 시행)

- 특허결정 시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 추가 불가
- **설정등록 후**에 발명자의 추가·정정 이유 설명서 추가 제출

현행(제2부제1장제2절) 2104쪽	개정안(제2부제1장제2절)
(4) 출원인이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신설>[특칙28(1)]	(4) 출원인이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특칙28(1)]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출원과정을 통해 출원서에 적은 바 있던 발명자를 누락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이 가능하다.[특칙28(2)]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는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이 가능하다.[특칙28(3)]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44조의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이전등록 받은 후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특법99의2(2), 특칙28(4)]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44조의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이전등록 받은 후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위 설명서 및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특법99의2(2), 특칙28(4)]

3 **정당한 권리자**에게 통지 폐지(시행규칙 제33조 삭제, '24. 11. 1. 시행)

현행(제2부제1장제4절4.2) 2111쪽	개정안(제2부제1장제4절4.2)
(5)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원인이 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거절결정한다. ~~또한, 그 거절이 확정된 후에는 특~~	(5)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원인이 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거절결정한다.

~~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특칙33]~~

현행(제5부제3장제12절12.3) 5373쪽	개정안(제5부제3장제12절12.3)
~~(2) 심사관은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조속히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으로 거절결정의 확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거절결정사실과 불복심판청구 사실을 통보한다.[특칙33]~~	<삭제>
(3) (생략)	(2) (좌동)

4 **서식** 개정사항 반영

- [별지제15호서식] 명세서의 기술분야에 사사기재 허용

현행(제2부제3장제3절3.2.1) 2312쪽	개정안(제2부제3장제3절3.2.1)
출원인이 발명이 속하는 국제특허분류(IPC) 또는 선진특허분류(CPC)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출원인이 발명이 속하는 국제특허분류(IPC) 또는 선진특허분류(CPC)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출처에 관한 정보[사사(謝辭, acknowledgement)]를 적을 수 있다.

2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사항

1 분할출원의 착수순위 조정, 변경·심사유예신청출원의 처리기한 연장

o 분할출원의 착수순위 조정(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제1항 개정, '25. 1. 1. 시행)

-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착수

o 변경출원의 처리기한 연장(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제1항 개정, '24. 5. 17. 시행)

- 심사착수 후 변경된 출원은 심사청구일부터 12월(종전 8월) 또는 출원서류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착수

* 일반심사 처리기간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수 후 분할·변경출원의 처리기한 연장

o 심사유예신청출원의 처리기간 규정(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의2 개정, '24. 5. 17. 시행) 반영

- 심사유예신청 출원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 이송받은 날부터 12개월(종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착수

* 일반심사 보다 먼저 처리되어 유예제도 취지에 반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처리기한 연장

o 재심사청구의 처리기간 규정 삭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개정, '25. 1. 1. 시행) 반영

- 재심사청구의 처리기간은 **조직성과지표**로 관리

현행(제5부제1장제6절6.1) 5131쪽	개정안(제5부제1장제6절6.1)
(5)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은 해당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원출원이 심사청구된 후 ~~분할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한다.[특칙38, 규정20~21]	(5)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은 해당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원출원이 심사청구된 후 변경된 경우, 또는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한다.[특칙38, 규정20~21]
(6) (생략)	(6) (좌동)
원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분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또는~~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8월과 출	원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변경출원된 경우에는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12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

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까지 심사착수한다. 다만, 우선심사청구된 원출원의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심사착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한다.[규정21(1), (2)]

(생략)

심사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규정21의2]

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까지 심사착수한다. 다만, 우선심사청구된 원출원의 변경출원의 심사착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한다.[규정21(1), (2)]

(좌동)

심사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규정21의2]

개정안(제5부제1장제7절) 5133-4쪽 표 개정안

일반·분할·변경출원 심사	심사착수	심사청구일	심사청구 순서	특칙§38 규정§20	
우선심사	심사착수	결정서 발송일/결정일	2월/3월	규정§66①	늦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공휴일이라도 그날. 이하 동일)
		선행기술조사결과 이송일	1월		
		보정서 이송일	1월	규정§66②	
심사유예	심사착수	심사유예희망시점/ 출원서류이송일	12월	규정§21조의2	늦은 날부터 12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변경출원 (원출원 착수 후)	심사착수	심사청구일	12월	규정§21①	늦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출원서류이송일	2월		

취소환송	다시 심사착수	서류이송일	1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규정§55①	
	중간서류	지정기간만료일/ 중간서류이송일	2월	규정§55⑤	늦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현행(제5부제1장제7절) 5132쪽	개정안(제5부제1장제7절)
(1) ~~재심사청구된 출원 및~~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담당심사관이 그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담당심사관이 그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우선심사대상 정비 등 시행령 개정사항

- 확대된 우선심사 결정 후 착수기간 규정(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제1항제3호, '24. 1. 1. 시행) 삭제

현행(제5부제1장제7절) 5133쪽	개정안(제5부제1장제7절)
(2)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의 우선심사여부 결정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착수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단, 고시 제4조제3호에 따른 우선심사의 경우는 4개월~~,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른 우선심사의 경우는 8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규정59, 규정66]	(2)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의 우선심사여부 결정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착수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단, 고시 제4조제3호에 따른 우선심사의 경우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규정59, 규정66]

3 직권보정 불수용에 따른 심사착수기한 변경

- 출원인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의견서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종전 1개월 이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착수(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의2제1항 개정, '23. 4. 28. 시행)

현행(제8부제2장제6절) 8207쪽	개정안(제8부제2장제6절)
(1)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사항을 확인하고,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사항 이외의 직권보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라면 의견서를 이송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규정26의2(1)]	(1)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사항을 확인하고,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사항 이외의 직권보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라면 의견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규정26의2(1)]

3 우선심사 심사기준 정비

1 우선심사대상 정비사항 반영

-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고령자·건강이상자 출원 삭제('24.1.1. 시행)

현행(제7부제4장제1절) 7402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1절)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생략) 1 ~ 10 (생략)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삭제~~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좌동) 1 ~ 10 (좌동) <삭제> <삭제>

현행(제7부제4장제1절) 7404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1절)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생략) 1 ~ 11 (생략) ~~1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좌동) 1 ~ 11 (좌동) <삭제>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삭제>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 대상) (생략)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 대상) (좌동)

1. (생략)

1. (좌동)

2. 가.~하. (생략)

2. 가.~하. (좌동)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삭제>

~~(1) 65세 이상 고령자~~

~~(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까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너. ~ 러. (생략)

너. ~ 러. (좌동)

3. (생략)

3. (좌동)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삭제>

~~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우선심사 신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이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행(제7부제4장제2절) 7412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2절)
녹색기술의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른 2022. 4. 20. 시행 특허법 시행령에 녹색기술의 정의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생략)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하도록 현행화하였다. <신설>	녹색기술의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른 2022. 4. 20. 시행 특허법 시행령에 녹색기술의 정의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좌동)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하도록 현행화하였다. 2024. 1. 1.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건강이상자의 출원,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2024. 5. 24.부터는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을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였다.

현행(제7부제4장제3절3.2.2) 7419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3절3.2.2.)
(1) ~ (5) (생략) ~~(6)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른 출원(외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	(1) ~ (5) (좌동) <삭제>

~~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 적음으로써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시6(4)]~~

현행(제7부제4장제3절3.3.3.2) 7423쪽

(1) (생략)

(2)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기한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고시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규정59]

다만,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한다.[규정59(2)]

(3) (생략)

(4)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지시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심사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한다. ~~다만,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등 선행기술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지시인 경우에는 선행기술~~

개정안(제7부제4장제3절3.3.3.2.)

(1) (좌동)

(2)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기한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규정59]

다만,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한다.[규정59(2)]

(3) (좌동)

(4)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지시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심사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한다.[규정60]

(5) ~ (7) (좌동)

(8) 좌동

① 우선심사신청이유를 복수로 신청

~~조사 전문기관에게도 함께 통지한다.~~[규정60]

(5) ~ (7) (생략)

(8) (생략)

① 우선심사신청이유를 복수로 신청한 경우의 취급

우선심사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이유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이유중 하나라도 우선심사신청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우선심사결정 후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인이 주장한 복수의 우선심사신청이유에 해당하는 착수기한(2개월, 4개월, ~~8개월~~)이 다른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우선심사결정을 한다.

한 경우의 취급

우선심사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이유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이유중 하나라도 우선심사신청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우선심사결정 후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인이 주장한 복수의 우선심사신청이유에 해당하는 착수기한(2개월, 3개월)이 다른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우선심사결정을 한다.

현행(제7부제4장제3절3.3.3.3) 7426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3절3.3.3.2)
(1) 우선심사결정 후 처리기간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4개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에 의하여 우선심사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8개월~~) 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심사관에게 이송(재조사에 의한 재이송을 포함)된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 이하 '처리기한'이라 한다)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규정66(1), 21(1)]	(1) 우선심사결정 후 처리기간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심사관에게 이송(재조사에 의한 재이송을 포함)된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 이하 '처리기한'이라 한다)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규정66(1), 21(1)]

현행(제7부제4장제4절4.15) 7469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5)
4.14 (생략)	4.14 (좌동)
(1) ~ (2) (생략)	(1) ~ (2) (좌동)
~~4.15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고서4(4)]~~ ~~(1) 대상~~ ~~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특령9(11)] 중에 우선심사 신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이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서4(4)]~~ ~~※ 해당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완지시한다. 보완요구서는 우선심사신청인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기관에도 함께 통지된다.~~ ~~(2) 기본 요건~~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우선심사신청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대상 청구항과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조사 대상 청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하고,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심사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선행기술문헌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한 대비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삭제>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하고 보완 지시 후에도 보완되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한다.~~

~~한편, 우선심사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의 우선심사신청의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의뢰된 출원임을 체크한 후 의뢰기관, 의뢰일자 등을 기재하여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심사신청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원출원이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에 의해 우선심사 결정되었고 원출원의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서 분할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선행기술조사의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선행기술조사의뢰 없이 분할출원에 대한 고시 제4조제4호의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 분할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분할전) 원출원 청구항과 동일함을 나타내는 대응관계표와 원출원의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분할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우선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관이 원출원의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분할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미비함을 이유로 보완을 지시한다.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 각하결정을 하고, 보완지시 후에 요건을 만족하는 별도의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미비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한다. 변경출원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기타 관련 사항

① 우선심사 신청후 명세서가 보정된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후에 청구항을 보정하였으나 보정후 청구항이 아닌 보정전 청구항을 기준으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심사 결정 대상 청구항과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조사 대상 청구항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보완지시를 하고, 보정후 청구항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를 결정한다.

② 우선심사 보완지시 후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로 신청 사유가 변경된 경우

기본적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선심사신청 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신청 사유가 적법한지를 기준으로 우선심사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기타 사유에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로 신청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출원인이 보완서류에 의뢰일자, 의뢰기관을 기재하여 제

~~출하면 담당 심사관은 시스템에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여부 결정 화면에서 '조사기관 지정'을 한다(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로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우선심사신청서에는 의뢰일자 및 의뢰기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 조사기관을 지정한다).~~

~~한편,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를 이유로 한 우선심사 신청의 결정에 있어서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경 이전의 신청 사유에 대한 보완지시의 보완기간이 완료된 후 우선심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출하도록 다시 보완지시할 수 있다.~~

~~③ 우선심사결정 후 명세서가 보정된 경우~~

~~우선심사결정 후에 청구항이 보정된 경우에 보정 전 청구항을 기준으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기관이 다시 조사를 수행하도록 그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현행(제7부제4장제4절4.16) 7472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6)
~~4.16 고령자 또는 시한부환자의 출원[고서4(2)(거)]~~ ~~(1) 대상~~	<삭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까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한 출원

(2) 기본요건

① 고령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시한부 환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기초로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질병의 종류나 정도를 한정하지 않고, 출원인의 건강 상태가 특허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 수행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1) "상기 환자의 현재 상태는 ~하고, 남은 수명은 대략 6개월로 예상됨"

(예2)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확진되었고, 현재 완치 가능성 및 소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예3)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치료 중에 있어서 향후 특허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 기타 **타법** 제·개정사항 및 **우선심사대상** 변경사항 등 반영

현행(제7부제4장제1절) 7401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1절)**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생략)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좌동)
1 ~ 4 (생략)	1 ~ 4 (좌동)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 12 (생략)

②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 12 (좌동)

② (좌동)

2. (좌동)

가. (좌동)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현행(제7부제4장제1절) 7403쪽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생략)

1 ~ 4 (생략)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생략)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생략)

1 ~ 2.

가.~라. (생략)

개정안(제7부제4장제1절)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좌동)

1 ~ 4 (좌동)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좌동)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좌동)

1 ~ 2.

가.~라. (좌동)

마. (생략)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차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 (4) (생략)

바. (생략)

(1) ~ (2) (생략)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신설>

(5) ~ (9) 삭제

사. ~ 아. (생략)

자. (생략)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생략)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

마. (좌동)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 (4) (좌동)

바. (좌동)

(1) ~ (2) (좌동)

(3) 특허청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6) ~ (9) 삭제

사. ~ 아. (좌동)

자. (좌동)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좌동)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

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4) ~ (5) (생략)	(4) ~ (5) (좌동)
차.~파 (생략)	차.~파 (좌동)
하. (생략)	하. (좌동)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 (6) (생략)	(3) ~ (6) (좌동)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거. (생략)	거. (좌동)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이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 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이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더.~러. (생략) 3.~5. (생략)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더.~러. (좌동) 3.~5. (좌동)

현행(제7부제4장제3절3.3.2.1) 7422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3절3.3.2.1)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규정57]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규정57]
정보고객지원국으로부터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이송되면,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당해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방식심사는 아래와 같다.[규정58]	산업재산정보국으로부터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이송되면,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당해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방식심사는 아래와 같다.[규정58]

현행(제7부제4장제4절4.3.3) 7438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3절4.3.3)
(1) (생략)	(1) (좌동)
① ~ ⑥ (생략)	① ~ ⑥ (좌동)
⑦「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⑦「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2) (생략)	(2) (좌동)

현행(제7부제4장제6절4.6) 7443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6절4.6)
(1) (생략)	(1) (좌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특령9(5), 고시4(2)(마)(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특령9(5), 고시4(2)(마)(1)]
(2) (생략)	(2) (좌동)

현행(제7부제4장제4절4.9) 7447쪽	현행(제7부제4장제4절4.9)
(1) (생략)	(1) (좌동)
① ~ ③ (생략)	① ~ ③ (좌동)
④「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고시4(2)(바)(4)]	④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고시4(2)(바)(4)]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 여부는 개별사업별로 판단하되, 국가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보조받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 여부는 개별사업별로 판단하되, 국가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보조받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⑤「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고시4(2)(바)(5)]
(2) (생략)	(2) (좌동)
① ~ ② (생략)	① ~ ② (좌동)
③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③ 특허청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체결한 협약서가 제출되면 우선심사를 인정한다.	특허청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발명진흥회와 체결한 협약서가 제출되면 우선심사를 인정한다.
④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④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한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주관기관에서 국방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이 제출되면 우선심사를 인정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방위사업청장 또는 주관기관에서 국방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이 제출되면 우선심사를 인정한다.
<신설>	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이 제출되면 우선심사를 인정한다.

현행(제7부제4장제4절4.11) 7450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1)
(1) (생략)	(1) (좌동)
① ~ ② (생략)	① ~ ② (좌동)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고시4(2)(자)(3)]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고시4(2)(자)(3)]
④ ~ ⑤ (생략)	④ ~ ⑤ (좌동)
(2) 심사 지침	(2) 심사 지침
① ~ ⑥ (생략)	① ~ ⑥ (좌동)
⑦ (생략)	⑦ (좌동)
a.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	a.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

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출원은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라는 상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없이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보아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출원은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라는 상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없이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보아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현행(제7부제4장제4절4.13) 7467쪽

(1) (생략)

(2) 기본 요건

① ~ ④ (생략)

⑤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례 적용을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인지 여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자료(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우선심사제도)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고시된 정보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3)

(1) (좌동)

(2) 기본 요건

① ~ ④ (좌동)

⑤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례 적용을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인지 여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자료(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특허 우선심사제도)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고시된 정보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행(제7부제4장제4절4.20) 7477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 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고시4(5)(나)]

(1)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된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령9(2)(1)(나), 고시4(5)(나)]

(2) 심사 지침

재난안전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 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고시4(5)(나)]

(1) 대상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된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령9(2)(1)(나), 고시4(5)(나)]

(2) 심사 지침

재난안전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재난안전제품 인증서」정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과 동일한지, 그 제품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직접 관련성은 그 제품 자체가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를 말하며, 그 제품의 일부 구성부품 또는 일부 구성요소가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예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음압기기'인 경우 : '음압기기 자체'는 인정, '음압기기의 구성부품'이나 '음압기기를 이용한 다른 발명'은 불인정

<신설>

서류는「재난안전제품 인증서」정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과 동일한지, 그 제품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직접 관련성은 그 제품 자체가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를 말하며, 그 제품의 일부 구성부품 또는 일부 구성요소가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예시)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음압기기'인 경우 : '음압기기 자체'는 인정, '음압기기의 구성부품'이나 '음압기기를 이용한 다른 발명'은 불인정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에 관한 정보는 필요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sis.go.kr)의 '재난안전산업육성제도'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 '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제7부제4장제4절4.22) 7479쪽

(1) (생략)

(2) 심사 지침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공고된 공고문 또는 별도로 정한 내부지침을 참고하여 우선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 2022. 11. 1. 특허청 공고 제2022-257호에 의해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20)

(1) (좌동)

(2) 심사 지침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공고된 공고문 또는 별도로 정한 내부지침을 참고하여 우선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삭제>

~~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i)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되고, ii)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중에 2022. 11. 1.~2023. 10. 31.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신설>

공고번호(공고일자)	우선심사대상	신청가능기간
제2022-257호 ('22. 11. 1.)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22.11.1.~ '23.10.31.
제2023-263호 ('23. 10. 31.)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23.11.1.~ '24.10.31.
제2023-264호 ('23. 10. 31.)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23.11.1.~ '24.10.31.
제2024-45호 ('24. 2. 19.)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24.2.19.~ '25.2.18.

제2024-234호 ('24. 11. 1.)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 또는 성능 검사·평가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24.11.1.~ '25.10.31.
제2024-235호 ('24. 11. 1.)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 또는 성능 검사·평가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24.11.1.~ '25.10.31.

3 녹색기술분야 우선심사대상 변경

- 우선심사신청대상이 녹색전문기업의 출원 등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출원에서 녹색기술분류가 부여된 출원으로 변경(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24. 5. 24. 시행), '녹색기술'에서 '탄소중립 녹색기술'로 용어변경

현행(제7부제4장제1절) 7405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1절)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생략) 1 ~ 2.가. (생략)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삭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좌동) 1 ~ 2.가. (좌동) 나. 탄소중립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 <삭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 삭제~~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전면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3.2) 7433쪽

(1) 대상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이 대상이 된다.

(2)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의 의미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는 2024. 1. 이후 출원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와는 별도의 분류체계로서, 이에 따른 新특허분류는 부분류 또는 부가정보로만 사용된다.

(3) 심사 지침

특허청 홈페이지(특허/실용신안제도-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에 게시된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참고하여 우선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2024. 5. 24.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는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GAG800번대)이다. 유의할 점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Z코드)에 해당하는 전체 기술분야가 우선심사 신청 대상인데 반해,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는 그 중 특허청 홈페이

지에 게시한 일부 특허분류만이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다.

상기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인은 단지 그 출원이 고시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에 해당함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분야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탄소중립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과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그 출원이 상기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보완지시 등을 하지 않고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특허분류기관에서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의 판단

특허분류기관의 분류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부여받지 않았으나, 심사관이 우선심사 대상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라고 판단되면 분류정정을 통해 해당 분류를 직권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지시를 하여야 하고, 보완지시 후에도 보완되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한다.

② 특허분류기관에서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로 분류된 경우의 판단

특허분류기관의 분류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심사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명백하게 新특허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류정정신청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게 되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지시를 하여야 한다. 보완 지시 후에도 보완되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한다.

---

4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및 PCT-PPH 대상국 현행화

-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대상국 추가

현행(제7부제4장제4절4.12.1) 7457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2.1)
* 대상국가 등(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	* 대상국가 등(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

및 정부간 기구):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21. 11월 기준 총 34개국)	및 정부간 기구):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24. 7월 기준 총 36개국)
(생략)	(좌동)
* 대상국가 등(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 및 정부간 기구):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유라시아,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21. 11월 기준 총 31개국)	* 대상국가 등(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 및 정부간 기구):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유라시아,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24. 7월 기준 총 34개국)

현행(제7부제4장제4절4.12.3) 7461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2.3)
※ 2021. 11. 1. 현재 특허심사하이웨이 상대국(정부간 기구 포함):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	※ 2024. 7. 29. 현재 특허심사하이웨이 상대국(정부간 기구 포함):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

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총 34개)	비아,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총 36개)

현행(제7부제4장제4절4.12.4) 7464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4.12.4)
※ 2021. 11. 1. 현재 PCT-PPH 대상국(정부간 기구 포함):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유라시아,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총 31개)	※ 2024. 7. 29. 현재 PCT-PPH 대상국(정부간 기구 포함):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노르딕 특허기구,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헝가리, EPO,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유라시아,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총 34개)

5 긴급처리 필요성에 대한 요건 완화

- 우선심사 신청인이 출원발명에 대하여 수행해야 하는 자체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25. 1. 15. 시행)

현행(제7부제4장제1절) 7405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1절)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3. (생략)	3. (좌동)
4. (생략)	4. (좌동)
5.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현행(제7부제4장제3절3.1.6) 7416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3.1.6)
~~3.1.6 우선심사와 긴급처리 필요성~~ ~~(1) 긴급처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 제61조 및 특허법 제61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는 제3자 실시 이외의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법시행령 제9조 및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긴급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 실시를 제외한 우선심사 대상은 긴급처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이 아닌 법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 특허출원도 특허법의 우선심사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긴급처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2) 긴급처리 필요성에 대한 판단 방법~~ ~~긴급처리 필요성은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자가 ①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발명인지, ②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발명인지, ③ 신속하게 심사되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명인지 등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①, ②와 관련하여서는 특허법사~~	<삭제>

~~행령 및 실용신안법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정할 때 이미 고려가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긴급처리 필요성을 판단할 때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도록 한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심사 신청인이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설명하면 담당 심사관은 긴급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실체심사시 활용한다.~~

~~긴급처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특허성에 대한 설명은 우선심사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대비설명을 아래의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대비설명 기재 방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편,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특허법시행령제9조10호) 및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특허법시행령제9조제11호 및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선심사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대비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자는 긴급처리 필요성을 인정한다.~~

~~(3)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대비설명 기재 방법 및 판단[고시 별지]~~

~~우선심사신청인이 긴급처리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한~~

방법, 그 검색결과 및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인접한 선행기술문헌 하나와의 대비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검색결과는 우선심사 신청 발명과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4건 이상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로운 기술분야로서 관련 선행기술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건 이하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검색결과로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검색결과에 관한 기재는 충분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비설명에서는 우선심사 신청 출원의 각 청구항을 그 청구항과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 하나를 선택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판단을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반드시 작성하고 종속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대비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독립항이 있더라도 해당 독립항이 대비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독립항과 구성요소가 완전히 대응되고 단순히 카테고리만 다른 경우에는 대비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독립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대비판단이 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참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등 출원발명과 관련된 별도의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 검색 방법 및 검색결과를 대신할 수 있으나, 대비설명은 기재하여야 한다.

(4)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대비설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의 취급

긴급처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대비설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는 보완지시를 하고 보완지시에 대한 대응이 없거나 대응 후에도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대비설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불충분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한다.[규정60, 규정62]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는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재시 필수 기재사항[①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검색결과(4건 이상), ②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관이 신규·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별개의 선행기술문헌을 찾았다고 해서 자체 선행기술조사가 불충분한 것은 아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대비설명은 심사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기재 형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분야로서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우선심사 신청인이 설명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의 검색결과 및 대비 설명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제7부제4장제3절3.2.2) 7419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3절3.2.2)
(1) ~ (3) (생략)	(1) ~ (3) (좌동)
(4) (생략)	(4) (좌동)
~~(가)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대비설명~~	<삭제>
(나) 우선심사의 신청이유	(가) 우선심사의 신청이유
(다) 출원 발명을 실시(또는 실시 준비)중인지 여부 및 그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재]	(나) 출원 발명을 실시(또는 실시 준비)중인지 여부 및 그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재]
(라) 출원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재]	(다) 출원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재]
(마) 출원발명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고시제4조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재)	(라) 출원발명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고시제4조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재)
<신설>	(참고)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대비 설명은 신청인이 원하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고,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심사 보완지시나 각하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자기 실시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 실시 준비 중인 경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요건 완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25. 1. 15. 시행)

현행(제7부제4장제11절) 7452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11절)
a.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의 판단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설명내용 및 실시품(시제품) 사진, 카탈로그, 제품사용설명서, 견본 등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으로 인정한다.	a.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의 판단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설명내용 및 실시품(시제품) 사진, 카탈로그, 제품사용설명서, 견본 등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실시(또는 실시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으로 인정한다.
b. 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설명내용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출원 발명이 사업으로서 실시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으로 인정한다. 업으로서 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예)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판매물건이 출원발명임을 포함)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출원인이 자기 물건을 판매시), 물품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b. 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설명내용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출원 발명이 사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으로 인정한다. 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예)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판매물건이 출원발명임을 포함)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출원인이 자기 물건을 판매시), 물품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조건 등 기재) <신설>	실시조건 등 기재) 출원기술을 기술이전하거나 받은 경우의 기술이전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화선도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밖에 출원발명이 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신설>	임대차 계약서 <삭제> 그 밖에 출원발명이 업으로서 실시(또는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의 사유로 신청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7 기타 우선심사 관련 변경내용

- 수수료 자동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추가

현행(제7부제4장제4절3.2.2) 7419쪽	개정안(제7부제4장제4절3.2.2)
(1) (생략)	(1) (좌동)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신청한 경우(전자출원만 가능)에는 우선심사신청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서 작성시 사전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된다.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신청한 경우(전자출원만 가능)에는 우선심사신청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서 작성시 사전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된다.
(참고)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란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현재는 기업은행만 가능)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란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현재는 기업은행, 농협만 가능)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 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을 선행해야하며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 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을 선행해야하며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 (5) (생략)	(3) ~ (5) (좌동)

4 심층면담제도(예비심사, 보정안리뷰, 재심사면담) 정비

1 예비심사 폐지에 따른 면담 심사기준 전면 개정

- 예비심사제도 폐지(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의3 및 제66조제1항제4호 삭제, '24. 3. 1. 시행)에 따라,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을 제8부제4장 및 제5장으로 이동하고 기준 정리

전면 개정안(제8부제4장-제5장)

제4장 보정안 리뷰

1. 보정안 리뷰의 개요

보정안 리뷰 제도는 출원인이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응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으로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특허 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관의 정확한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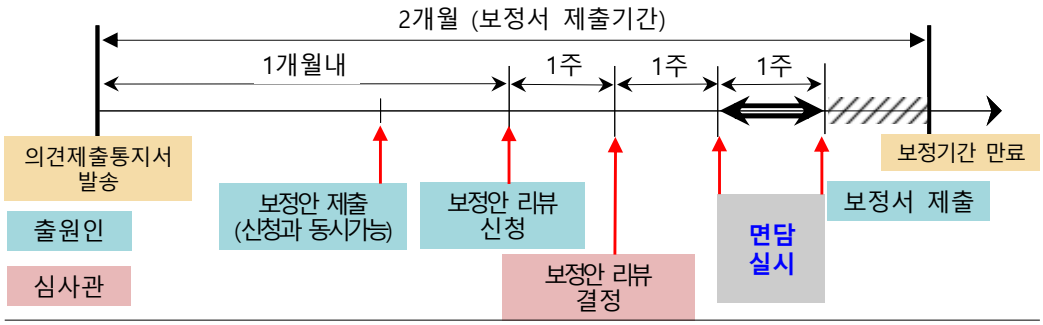

2. 보정안 리뷰의 신청 대상

2.1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

보정안 리뷰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 중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서 또는 보정안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 모든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미 보정안 리뷰 또는 재심사 면담('24. 3월 폐지된 예비심사 면담 포함)을 실시한 출원에 대해서는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없다.

2.2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 한다.

2.3 보정안 리뷰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

보정안 리뷰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출원에 대해 책임 있는 대

응을 할 수 있는 자로, 출원인(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등), 해당 출원의 대리인 또는 출원인이나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면담 절차의 위임을 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다.

다만, 대리인이 있는 출원의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면담에 참석해야 한다. 발명자도 면담에 참석할 수 있으나 출원인, 대리인 또는 면담 절차의 위임을 받은 자 등 해당 출원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한편, 보좌심사관이 관련된 출원에 대해서는 보좌심사관의 지도심사관도 면담에 동석하여야 한다.

2.4 보정안 리뷰 면담의 내용

보정안 리뷰 면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출원인이 사전에 제출한 보정안을 기초로 하여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면담에 참석하는 주체별로 출원인 등은 출원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설명과 함께 보정안에 따라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관은 제출된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을 출원인 등에게 설명한다. 이와 함께 각 주체는 해당발명이 적정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정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3. 보정안 리뷰 신청 및 결정 절차

3.1 보정안 리뷰 신청

보정안 리뷰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보정안 리뷰의 신청은 출원인 등이 특허로(https://www.patent.go.kr) 홈페이지(신청/제출-면담신청/정보제공-보정안리뷰)를 통해 신청인, 출원 번호, 면담 희망일시, 면담 참석자, 연락처, 보정안 제출여부 등을 기재하고, 「보정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편, 출원인 등은 보정안 리뷰 신청 시 설명자료 등의 준비 기간과 심사관의 보정안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보정안 리뷰 신청일로부터 2주 후부터 3주 이내(면담 가능기간)에서 3일을 면담 희망일로 선택하여 면담 희망시간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2 보정안 리뷰 결정

3.2.1 보정안 리뷰 결정 기준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보정안 리뷰 신청 내용은 해당 출원의 담당 심사관에게 바로 이송된다.

보정안 리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면담 신청일로부터 7일(그 날이 공

휴일이면 그 다음날) 내에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보정안 리뷰 신청을 결정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보정안 리뷰 신청의 수락 여부는 신청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① 보정안 제출여부

보정안은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형태로 보정안 리뷰 신청 전이나 신청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심사관은 보정안 리뷰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넷의 출원이력을 통해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방식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원이력에서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과와 출원인 등을 통해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실제 제출여부가 확인되면 보정안 리뷰 신청을 결정하도록 한다.

② 신청일자

보정안 리뷰는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③ 면담 참석자

보정안 리뷰를 위한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법인내 기술개발부서 또는 특허관련부서 직원 등도 가능), 해당 출원의 대리인, 발명자,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나 대리인으로부터 면담절차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같은 특허법인 소속이더라도 지정된 변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면담절차의 위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출원에 대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면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는 단독으로 면담에 참석할 수 없다.

④ 면담 희망일시

보정안 리뷰 면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2주부터 3주 이내 중 우선순위에 따라 3일을 면담 희망일로 지정하여 면담을 받으려는 시간과 함께 면담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유

이미 보정안 리뷰 또는 재심사 면담('24. 3월 폐지된 예비심사 면담 포함)을 실시한 출원에 대해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는 등 보정안 리뷰 면담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3.2.2 보정안 리뷰 신청의 수락

심사관은 당해 보정안 리뷰 신청이 상기 리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보정안 리뷰 신청을 수락한다.

심사관은 보정안 리뷰 여부 결정시 보정안 리뷰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면

담 희망일시」 중 어느 하나로 보정안 리뷰 면담일시를 선택한다. 심사관은 신청된 모든 면담 희망일시에 면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원인 등과 유선을 통해 구체적인 면담일시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상기 「3.2.1 보정안 리뷰 결정 기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치유 가능할 경우에는 출원인 등과 협의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관은 출원인 등과 협의를 통해 해당 반려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담 신청서의 보정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보정안 리뷰 면담을 수락할 수 있다.

3.2.3 보정안 리뷰 신청의 반려

심사관은 당해 보정안 리뷰 신청이 상기 「3.2.1 보정안 리뷰 결정 기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고 출원인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도 반려사유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안 리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은 보정안 리뷰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보정안 리뷰 신청 가능 기간에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보정안 리뷰 면담을 재신청할 수 있다.

3.3 면담의 연기 또는 취소

출원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면담 기일에 면담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1회에 한하여 출원인 등과 협의하여 면담 가능일(면담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지 21일) 중 면담 기일을 다시 결정하고 출원인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판단한 결과 출원인 등의 연기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면담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정안 리뷰 면담 진행 절차

4.1 면담 사전준비

심사관은 면담에 앞서 제출된 보정안에 근거하여 기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는지 여부와 특허요건, 기재불비 등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면담시 출원인 등에게 거절이유 해소 여부,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여부 및 보정방향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실제 중간서류 심사과정에 준하여 준비해야 한다.

심사관은 면담 시 면담에 필요한 출원서류, 제출된 보정안 및 설명서, 사전검토 결과 등을 준비하여 면담에 참석한다. 또한, 면담 후 출원인 등과 면담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할 「면담기록서(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일괄심사용)」(이하 '면담기록서'라 한다), 「면담기록서(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일괄심사용) 추가용지」(이하 '추가용지'라 한다)를 준비하여 면담에 참석한다.

한편, 심사관의 보정안 리뷰 결과는 면담기록서에 미리 기재하여 면담시 이를 참고로 출원인 등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면담 참석자의 신분 확인

심사관은 면담 시작 전에 면담 참석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미공개된 출원의 경우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면담 참석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면담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화면담의 경우 면담 참석자의 신분을 유선상으로 확인해야 하며, 추후 면담 참석자가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2.3. 보정안 리뷰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아닐 시에는 면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다.

사전에 신청한 면담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다른 경우에는 출원 서류에 대한 보안 및 면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중단하거나 착수기한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는 면담에 참석한 자를 고려하여 면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4.3 면담 진행

면담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제출한 보정안 설명 등 (주체: 출원인 등)

출원인 등은 보정안 리뷰 신청 전에(또는 동시에) 제출한 보정안을 심사관에게 설명한다. 보정안에 대한 설명은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출원발명에 관한 기술 설명 및 선행기술 인용문헌에 대비한 주장도 가능하다.

이 때, 출원인 등은 심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원발명의 실물 또는 멀티미디어자료(사진, 영상 등)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상기 면담 보충자료를 사전에 요청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2) 보정안 리뷰 결과 설명 (주체: 심사관)

심사관은 보정안 리뷰 결정을 한 후 면담 전에 제출된 보정안에 따른 거절이유 해소 여부,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면담에서 출원인 등에게 설명한다.

또한, 심사관은 면담 중 거절이유 해소 또는 적정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방향을 출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3) 적정한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보정방향 협의 (주체: 출원인 등 / 심사관)

심사관이 보정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한 결과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심사관과 출원인 등은 출원 발명이 발견된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정방향을 협의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심사관은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보정방향 제시라고 할지라도

출원인에게 이를 따를 것을 지시하거나 의도하지 말고, ① 심사관의 보정에 대한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보정은 출원인 등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과 ② 면담 후에 새로운 선행기술 또는 증거를 발견하거나 면담 후 제출된 보정서에 따라 심사관이 제시한 보정 의견은 변경될 수 있음을 출원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4.4 면담 기록

면담에 참석한 출원인 등과 심사관은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면담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음을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을 완료한 면담기록서는 면담 후 특허넷 시스템에 탑재하여 심사이력으로 기록한다.

면담기록서에는 면담 일시 및 장소,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면담 참석자명, 보정안 리뷰 결과, 협의된 보정방향 등을 기재한다.

(1) 보정안 리뷰 결과의 기재

'보정안 리뷰 결과'는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안을 반영하여 심사관이 사전검토한 결과와 이에 대응한 출원인의 의견에 관한 것이다.

심사관은 보정안을 반영한 명세서의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을 면담 전에 미리 작성하여 면담시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전검토 결과는 면담시 출원인 등에게 구두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담기록서에는 거절이유의 취지정도를 기재하여 면담시 또는 면담 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출원인의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은 면담시 심사관이 설명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제시한 의견을 기재한다.

(작성예)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

법조항	청구항	심사관	출원인
제29조 제2항	1-3	인용발명 1의 △△△ 구성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음	인정함
	4-6	인용발명 1의 △△△ 구성과 인용발명 2의 ▲▲▲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음	인용발명 1, 2는 서로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그 결합이 쉽지 않음
제42조 제4항 제1호	4	청구항 4의 ☆☆☆의 수치 한정은 발명의 설명의 수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	인정함
제42조 제4항 제2호	1	청구항 1의 ○○○는 그 의미가 불명확함	○○○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함

(2) 협의된 보정방향의 기재

심사관과 출원인 등은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의 보정방향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사 이력을 남기기 위해 협의결과를 면담기록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보정방향의 협의 결과는 보정의 '방향'에 대해서만 협의된 경우와 구체적인 '보정안'까지 협의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면담기록서의 기재는 가급적 협의된 내용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예1) '보정 방향'에 대해서만 협의된 경우 작성 내용

1) 청구항 1의 진보성 거절이유 관련

청구항 1의 ◇◇◇ 구성을 발명의 설명 및 도5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

2) 청구항 4의 기재불비(제42조제4항제1호) 거절이유 관련

청구항 4의 ☆☆☆의 수치 한정 범위를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1에 기재된 수치 범위내로 보정

(작성예2) 구체적인 '보정안'까지 협의된 경우 작성 내용

1) 청구항 1의 진보성 거절이유 관련

청구항 1의 ◇◇◇의 구성을 ◆◆◆부가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의 상단에 톱니로 결합된 ◎◎◎부가 회전하여 ◇◇◇가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

2) 청구항 4의 기재불비(제42조제4항제1호) 거절이유 관련

청구항 4의 ☆☆☆의 수치 한정 범위를 50~60℃로 한정

다만, 심사관과 출원인 등이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방향을 충분히 논의하였음에도 협의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된 보정방향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5 면담 종료

심사관은 보정안에 대해 출원인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담의 목적을 달성하여 면담기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면담 중에도 아래와 같이 면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등에게 통지하고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관은 면담기록서 작성시 면담 종료시까지 논의된 사항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① 면담의 내용이 본래의 면담 취지를 벗어난 경우(출원내용에 관계없이 특허제도나 절차에 대한 단순한 상담 등이 면담내용의 중심이 된 경우 등)

② 출원인 등이 면담시 다수의 예비 보정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보정안에 대한 협의에 도달할 수 없거나 심사관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④ 면담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

⑤ 기타 효율적인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정안 리뷰 면담 후 절차

5.1 출원인 등의 절차

대리인(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면담 후 협의된 보정방향에 대한 출원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명세서 등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면담기록서에 협의되어 기재된 보정방향은 비록 심사관과 출원인 등 간에 협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출원인은 면담기록서에 기재된 보정방향 내용과 달리 자유롭게 보정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에 출원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은 면담을 통해 협의된 보정방향을 반영하여(또는 출원인 등이 자발적으로) 보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보정서(필요한 경우 의견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면담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의견서의 기재 내용을 간략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2 심사관의 절차

5.2.1 면담결과기록서 작성(면담기록서의 심사이력화)

심사관은 면담시 작성한 4.4절의 면담기록서를 심사이력으로 남기기 위해 면담 종료 후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면담결과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면담결과기록서에는 면담 내용에 대해 출원인 등이 확인하였음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출원인 등의 서명이 날인된 면담기록서를 ~~어미지화하여~~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5.2.2 중간서류 처리

심사관은 면담 후 통상의 중간서류 처리절차 및 기간에 따라 면담기록서에 기록된 내용(협의된 보정방향 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5장 재심사 면담

1. 재심사 면담의 개요

재심사 면담 제도는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으로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재심사 시 특허 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관의 정확한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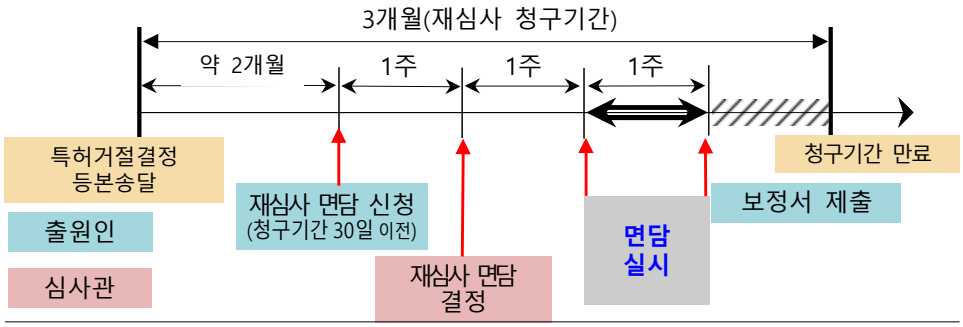

2. 재심사 면담의 신청 대상

재심사 면담은 심사관이 거절결정한 출원 중에서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이 되는 날까지 재심사 면담을 신청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결정된 출원이나 이미 보정안 리뷰('24. 3월 폐지된 예비심사 면담 포함)를 진행한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없다. 재심사 면담의 신청자·참석자와 면담의 내용은 「제8부 제4장 보정안 리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 재심사 면담 신청 및 결정 절차

3.1 재심사 면담 신청

재심사 면담은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재심사 면담의 신청은 출원인 등이 특허로(https://www.patent.go.kr) 홈페이지(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재심사면담)를 통해 신청인, 출원 번호, 면담 희망일시, 면담 참석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보정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면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편, 출원인 등은 재심사 면담 신청 시 설명자료 등의 준비 기간과 심사관의 보정안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재심사 면담 신청일로부터 2주 후부터 3주 이내(면담 가능기간)에서 3일을 면담 희망일로 선택하여 면담 희망시간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면담을 할 수 없고, 일반 면담은 가능하다.

3.2 재심사 면담 결정

3.2.1 재심사 면담 결정 기준

재심사 면담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면담 신청일로부터 7일(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이내에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재심사 면담 신청을 결정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재심사 면담 신청의 수락 여부는 신청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 청구 시에만 보정서 제출이 가

능하며 2회째부터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되므로, 면담 전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특법47, 특법67의2(1)]**

① 신청일자

재심사 면담은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재심사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② 면담 참석자

재심사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법인내 기술개발부서 또는 특허관련부서 직원 등도 가능), 해당 출원의 대리인, 발명자,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나 대리인으로부터 면담절차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같은 특허법인 소속이더라도 지정된 변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면담절차의 위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출원에 대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면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는 단독으로 면담에 참석할 수 없다.

③ 면담 희망일시

재심사 면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2주부터 3주 이내 중 우선순위에 따라 3일을 면담 희망일로 지정하여 면담을 받으려는 시간과 함께 면담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유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심사 면담을 신청하거나, 이미 보정안 리뷰('24. 3월 폐지된 예비심사 면담 포함)를 실시한 출원에 대해 재심사 면담을 신청하는 등 재심사 면담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3.2.2 재심사 면담 신청의 수락

심사관은 당해 재심사 면담 신청이 상기 면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재심사 면담 신청을 수락한다.

심사관은 재심사 면담 여부 결정시 당사자가 제출한 「면담 희망일시」 중 어느 하나로 면담일시를 선택한다. 심사관은 신청된 모든 면담 희망일시에 면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원인 등과 유선을 통해 구체적인 면담일시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상기 「3.2.1 재심사 면담 결정 기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치유 가능할 경우에는 출원인 등과 협의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관은 출원인 등과 협의를 통해 해당 반려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담 신청서의 보정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면담을 수락할 수 있다.

3.2.3 재심사 면담 신청의 반려

심사관은 당해 재심사 면담 신청이 상기 「3.2.1 재심사 면담 결정 기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고 출원인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도 반려사유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 면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은 재심사 면담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재심사 면담 신청 가능 기간에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재심사 면담을 재신청할 수 있다.

3.3 면담의 연기 또는 취소

출원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면담 기일에 면담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1회에 한하여 출원인 등과 협의하여 면담 가능일(면담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지 21일) 중 면담 기일을 다시 결정하고 출원인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판단한 결과 출원인 등의 연기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면담을 취소할 수 있다.

4. 재심사 면담 진행 절차

4.1 면담 사전준비

심사관은 면담에 앞서 제출된 보정안 및 설명서에 근거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정요건 충족여부와 기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는지 여부, 특허요건, 기재불비 등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면담시 출원인 등에게 재심사 보정의 적법 여부, 거절이유 해소 여부,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여부 및 보정방향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실제 중간서류 심사과정에 준하여 준비해야 한다.

심사관은 면담 시 면담에 필요한 출원서류, 제출된 보정안 설명서, 사전 검토 결과 등을 준비하여 면담에 참석한다. 또한, 면담 후 출원인 등과 면담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할 「면담기록서(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일괄심사용)」(이하 '면담기록서'라 한다), 「면담기록서(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일괄심사용) 추가용지」(이하 '추가용지'라 한다)를 준비하여 면담에 참석한다.

한편, 재심사 면담 결과는 면담기록서에 미리 기재하여 면담시 이를 참고로 출원인 등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면담 참석자의 신분 확인, 면담 진행, 면담 기록 및 면담 종료

면담 참석자의 신분 확인에 관해서는 「제4장 보정안리뷰」의 「4.2 면담 참석자의 신분 확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면담 진행, 면담 기록 및 면담 종료에 관해서는 「제4장 보정안 리뷰」 4.3~4.5절의 면담 진행, 면담 기록 및 면담 종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5. 재심사 면담 후 절차

5.1 출원인 등의 절차

대리인(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면담 후 협의된 보정방향에 대한 출원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명세서 등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면담기록서에 협의되어 기재된 보정방향은 비록 심사관과 출원인 등 간에 협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출원인은 면담기록서에 기재된 보정방향 내용과 달리 자유롭게 보정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에 출원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은 면담을 통해 협의된 보정방향을 반영하여(또는 출원인 등이 자발적으로) 보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까지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보정서(필요한 경우 의견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면담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의견서의 기재 내용을 간략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2 심사관의 절차

5.2.1 면담결과기록서 작성(면담기록서의 심사이력화)

심사관은 면담시 작성한 4.2절의 면담기록서를 심사이력으로 남기기 위해 면담 종료 후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면담결과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면담결과기록서에는 면담내용에 대해 출원인 등이 확인하였음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출원인 등의 서명이 날인된 면담기록서를 ~~이미지화하여~~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

5.2.2 재심사 진행

심사관은 면담 후 통상의 재심사 처리절차 및 기간에 따라 면담기록서에 기록된 내용(협의된 보정방향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

2 **전화면담** 제도 **규정화**에 따른 심사기준 정비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제1항 개정('24. 1. 31. 시행)사항 반영

현행(제5부제3장제10절10.1) 5362쪽	**개정안(제5부제3장제10절10.1)**
(1) 면담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팩스,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면담을 신청한다. 면담을 희망하는 출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출원 건별로 면담을 신청하되, 담당심사관이 동일한 출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신청으로 할 수 있다.[규정17(2)] (생략)	(1) 면담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팩스,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면담을 신청한다. 면담을 희망하는 출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출원 건별로 면담을 신청하되, 담당심사관이 동일한 출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신청으로 할 수 있다.[규정17(2)] (좌동)

(2) 심사관은 당사자와 면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기일을 정하여 면담을 요청한다. 심사관의 면담 요청은 전화통화만으로도 면담이 필요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생략)	(2) 심사관은 당사자와 면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기일을 정하여 면담을 요청한다. 심사관의 대면 또는 화상 면담 요청은 전화통화만으로도 면담이 필요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좌동)

현행(제5부제3장제10절10.2) 5363쪽	개정안(제5부제3장제10절10.2)
(1) 면담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한다. 대면 면담의 경우에는 특허고객상담센터 내의 심사관 면담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상 면담은 서울사무소 멀티미디어센터(13층)의 원거리화상회의시설과 본청의 화상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화상 면담이 가능한 시설을 활용한다. (2)~(3) (생략) (4) 심사관은 면담기록서에 출원번호, 심사관명, 출석자명, 면담 내용 및 면담 결과 등을 기록하고 출석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면담 내용은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의 심사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규정 17(5)]	(1) 면담은 대면, 화상 또는 전화로 진행한다. 대면 면담의 경우에는 민원동의 특허청 고객지원실 내의 면담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상 면담은 본청의 영상면담실(307호)과 재택근무지(부득이한 경우 사무실)를 이용하거나 기타 화상 면담이 가능한 시설을 활용한다. (2)~(3) (좌동) (4) 심사관은 면담기록서에 출원번호, 심사관명, 출석자명, 면담 내용 및 면담 결과 등을 기록하고 출석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특허청 고객지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면담 내용은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의 심사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규정 17(5)]

5 심사쟁점의 심사기준 정비

1 디지털치료분야의 **비상식적·미검증 효과** 입증

- 자폐치료 시스템 등록특허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질의
- 기술상식에 어긋나는 의학적 효과나 비상식적 효과 등의 예시로 디지털치료분야 추가

현행(제2부제3장제5절) 2321쪽	개정안(제2부제3장제5절)
(예2) (생략) <신설>	(예2) (좌동) (예3) 청구항에 기재된 '유소년의 자폐 치료 시스템'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치료 결과(예: 2급 자폐 판정을 받은 10세 남자 환자 1명에 대한 결과 등)만으로는 발명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위반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동출원**의 **하자치유**가능 시점 명확화

- 공동출원 위배 논란 언론보도
- 판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공동출원의 하자는 출원 전·후에 권리의 지분이전 등을 통해 치유가능

현행(제2부제1장제2절) 2104쪽	개정안(제2부제1장제2절)
(3) (생략) <신설>	(3) (좌동) (4)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출원 전 또는 출원 후에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전받아 단독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출원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공동출원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에도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2004후2740]
(4)~(5) (생략)	(5)~(6) (좌동)

3 모방출원의 심사처리 방안

- 출원인(발명자)은 다른 미공개 출원인데 명세서가 거의 동일하거나 동일한 특이구성을 포함하는 출원의 처리 방안

현행(제2부제1장제2절) 2106쪽	개정안(제2부제1장제2절)
(예2) (생략) <신설>	(예2) (좌동) (예3) 선출원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K씨인 미공개 출원이고, 후출원은 선출원의 구성을 포함하면서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M씨인 경우, 후출원의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동일한 대리인 또는 사무소 등)에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4 주지의 부합 판단 시 고려사항 명시

- 심사·심판합동회의('23. 12.)에서 논의된 사항
- 필요한 전제사실, 중심 구성요소, 판단내용의 일치 등을 고려하여 주지의 부합 판단

현행(제5부제3장제5절5.2) 5321쪽	개정안(제5부제3장제5절5.2)
여기서,「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	여기서,「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인 경우」란 해당 거절이유가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거절이유와 주지(主旨)에 있어서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가 부합되는지 여부는 일부의 문구나 표현에 구애되어서는 아니 되고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

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2006후1766, 2001후2702]	가 공지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이 동일하고, 선행기술문헌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사실(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판단 내용(해결하여야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수단, 결합의 동기·암시 또는 장해요소 등)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며,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기대되는 의견서의 내용이나 출원인이 시도할 보정의 방향이 같아, 새로이 주장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2006후1766, 2001후2702, 2016허7695]

6 일괄심사제도 정비

1 일괄심사대상 추가 및 정비

- 일괄심사대상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추가

- 국가신기술개발지원사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일괄심사대상 현행화

현행(제8부제6장제2절2.2) 8601쪽	개정안(제8부제6장제2절2.2)
(생략)	(좌동)
(1) (생략)	(1) (좌동)
① ~ ⑤ (생략)	① ~ ⑤ (좌동)
⑥ <신설>	⑥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2) 동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2 일괄심사의 예비심사 안내

- ‘24년 3월 1일부로 폐지된 예비심사면담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괄심사에서 진행되는 예비심사 안내문구 추가

현행(제8부제6장제3절3.4) 8603쪽	개정안(제8부제6장제3절3.4)
(1) ~ (3) (생략)	(1) ~ (3) (좌동)
(4) 일괄심사 신청시 예비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비심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착수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 사전준비를 제외한 예비심사 면담 진행 및 면담 후 절차는 제8부 제4장의 「4. 예비심사 면담 진행 절차」, 「5. 예비심사 면담 후 절차」와 동일하다.~~	(4) (좌동)
<신설>	※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 면담을 통해 심사 의견을 교환한 예비심사 면담제도는 ’24. 3. 1.자로 폐지되었으나, 일괄심사에서의 ‘예비심사’는 일괄심사 고시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지된 예비심사 면담과 별도로 일괄심사 수행시 출원인은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관은 면담을 진행하고, 예비심사결과는 통지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출원**의 일괄심사신청 요건 완화

- 일괄심사를 위한 우선심사신청 시 상표등록출원은 우선심사신청을 제한한 요건(자기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을 폐지

현행(제8부제6장제3절3.4) 8604쪽	**개정안(제8부제6장제3절3.4)**
(5) (생략) 우선심사 신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선심사가 필요한 출원이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로서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5) (좌동) 우선심사 신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6) (생략) ① 시제품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신설> ②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③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④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⑤ 기타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6) (생략) ① 실시품(시제품) 실물사진, 사용설명서,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②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③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④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⑥ 기타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기타사항

1 동일자 상·하위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정비

- 선·후원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이 원칙이고, 상위개념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발명을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지로 판단

현행(제3부제5장제5절) 3510쪽	개정안(제3부제5장제5절)
(5) (생략) ~~(6) 발명 A 및 B의 출원일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발명 A를 선원으로 하고 발명 B를 후원이라고 가정하여 양자를 대비할 때 후원 발명 B가 선원 발명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발명 B를 선원으로 하고 발명 A를 후원이라고 가정하여 양자를 대비하였더니 발명 A가 발명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양자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5) (좌동) <삭제>

2 선택발명에서 추가 입증자료 인정기준

- 추가 입증자료의 허용 범위를 명세서 기재내용 내로 명확화

현행(제3부제3장제6절6.4.1) 3317쪽	개정안(제3부제3장제6절6.4.1)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된 때에는 출원인이 비교 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다.<신설>	(좌동) 이때 추가적인 실험자료 등은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기재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2001후2740, 2005후582]

3 국방관련 출원 심사(제7부 기타 심사절차) 현행화

- 변경된 부서명 반영: 특허심사기획과 → 특허심사총괄과, 출원과 → 산업재산출원과, 정보관리과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 관계법령 현행화: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등록사무취급규정,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개정 관리가 쉽지 않은「국방관련 출원 규정」첨부 삭제

4 **특허분류**의 부여(제5부 심사절차) 절차 현행화

- 변경된 부서명 반영: 특허심사기획과 → 특허심사총괄과, 출원과 → 산업재산출원과, 국제출원과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 선진특허분류(CPC)의 구조 현행화

개정안(제5부제1장제3절3.4.1) 5119쪽 표 개정안

Section A-H	Section Y
Main Trunk • 발명정보 또는 부가정보 기준(IPC 세분화) • 약 166,000개 분류기호로 구성	• 신기술(기후변화 등) 및 크로스오버 기술을 반영 코드 • 기존 USPC XRACs와 digests를 포함하는 코드 • 약 15,000개 분류기호로 구성
Indexing Codes - 2000 series • 기존 ICO 코드 중 breakdown, orthogonal 코드에 해당 • IPC 인덱싱 코드로 부가정보에만 부여 • 약 78,000개 분류기호로 구성	

CPC분류표의 구성

5 **원출원 표시**의 자명한 오기

- 분할출원서의 원출원 표시를 보정할 수 있는 자명한 오기의 예시 추가

현행(제6부제1장제4절) 6106쪽	개정안(제6부제1장제4절)
4. 분할출원 절차	**4.** (좌동)
(1) (생략)	(1) (좌동)
<신설>	(참고) 권리·연도표시를 오기한 경우 및 본인의 관련출원(최초출원 또는 분할출원)중 다른 번호로 기재하고

소명한 경우는 자명한 오기로 인정한다.

6 징수규칙 개정사항 반영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등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3조 개정, '25. 1. 1. 시행)

현행(제1부제7장제3절3.1) 1707쪽

면제대상	면제대상 수수료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10건)
2.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3.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등	
5.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10.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11. 병(兵), 사회복무요원 또는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2. 「기술이전법」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에 한정)	이전등록료, 출원인변경신고료
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이전등록료, 신탁 또는 변경 등록료

현행(제1부제7장제3절3.2) 1708쪽

감경 대상		감경률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설정등록일 기준 4년~존속기간까지 특허료·등록료
1.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85%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20건)	5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70%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20건)	
2. 중소기업		70%	
3. 기술이전법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에 한정)		50%	
4. 기술이전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6.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감경 없음	70%
7.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 연구결과물 출원	50%	감경 없음
8. 중견기업	30%	30% (4년~9년분까지)

현행(제1부제7장제3절3.3) 1709쪽

(생략)

(1) (생략)

(2)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70%(연간 10건)

(3)~(6) (생략)

개정안(제1부제7장제3절3.3)

(좌동)

(1) (좌동)

(2)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70%(연간 10건)

(3)~(6) (좌동)

현행(제1부제7장제3절3.4) 1710쪽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포된 날부터 1년간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등록료를 감면한다.[특법83(2)(2), 징수규칙13, 별표7]

개정안(제1부제7장제3절3.4)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 중 피해를 입은 자(선포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정)에 대하여 선포된 날부터 1년간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등록료를 감면한다.[특법83(2)(2), 징수규칙13, 별표7]

감면대상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설정등록일 기준 4년~존속기간까지 특허료·등록료
1.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90%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80%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80%	

현행(제1부제7장제3절3.5) 1711쪽	개정안(제1부제7장제3절3.5)
(1)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징수규칙7(6)]	(1)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징수규칙7(6)]

7 심사관 제척 요건 정비

- 이해충돌해소기간 삭제 및 임용 전 기간 완화(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23. 4. 28. 시행)

현행(제5부제1장제2절2.2) 5107쪽	개정안(제5부제1장제2절2.2)
(5)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심사관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관~~ 임용 직전 3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로부터의 출원을 심사하게 된 ~~재직기간 2년 이하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심사로부터 배제되어 지정 변경된다.	(5)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심사관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용 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로부터의 출원을 심사하게 된 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심사로부터 배제되어 지정 변경된다.

8 참조 판례 정비

- 참조 판례 오기 수정·삭제·변경 등

현행(제2부제4장제4절) 2414쪽	개정안(제2부제4장제4절)
(생략)~~[2005후1486]~~	(좌동)<삭제>

현행(제3부제3장제6절6.2.2) 3312쪽	개정안(제3부제3장제6절6.2.2)
(예1) (생략)[2003후243]	(예1) (좌동)[2000후3623]

현행(제3부제3장제6절6.2.5) 3314쪽	개정안(제3부제3장제6절6.2.5)
[2005후2991, 2004후1137, ~~2000후150~~]	[2005후2991, 2004후1137]

현행(제3부제3장제6절6.3) 3316쪽	개정안(제3부제3장제6절6.3)
(3) (생략)[~~97후2224~~]	(3) (좌동)[2000후3234, 2005후1264]

현행(제3부제5장제2절) 3502쪽	개정안(제3부제5장제2절)
(생략)[2002후1937]	(좌동)[2002후1973]